

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4. 10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내용 중 자원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의 근거규정을 “법 제7조 제2항”에서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 변경 (안 제3조제1항)
- 나.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원 재활용실행계획의 근거규정을 “시 조례 제3조”에서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변경 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
(2003. 12. 30개정)
- 나. 예산조치 : 비예산사업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시 조례 제3조”를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</p> <p>①구청장은 <u>법 제7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령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<u>시 조례 제3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</p> <p>①----- <u>법 제7조제3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----- <u>법 제7조제4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